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관광사업자 정의에 2인 이상의 개인 공동사업자 명시 등 >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99호)

2026.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관광사업자 정의에 2인 이상의 개인 공동사업자 명시 등	2
※ 참고자료	7
1. 관광산업의 등록기준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5. 12. 31.

다. 회 부 일: 2026. 1.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사업자”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이로 인해 실무상 공동사업자로 관광사업 등록 등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 투자자들의 공동투자를 통한 사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관광숙박업 등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광사업자 정의에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관광사업에 있어 공동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여 실무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Ⅲ. 검토의견

1. 관광사업자 정의에 2인 이상의 개인 공동사업자 명시 등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① 관광사업자의 정의에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② 관광숙박업을 등록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는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2조제2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u>자</u> 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자(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을 등록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는 관광숙박업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추어야 한다)를-----.

현행	개정안
3. ~ 13. (생략)	3. ~ 13.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현행법은 “관광사업자”¹⁾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²⁾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1)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 13. (생략)

2)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준비·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 7. (생략)

자본금과 시설, 설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그런데 현행법에는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사업자로 관광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25.10월) 결과에 따르면, 둘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관광숙박업을 등록한 경우는 전체(2,373개소)의 약 10%(228개소) 수준으로, 이 중 일부사업자만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는 7.9%(18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개정안은 ① 관광사업자의 정의에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를 명시하고, ② 관광숙박업을 등록하려는 공동사업자는 관광숙박업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3)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현행법령은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사업자의 수를 등록기준⁴⁾이나 등록 결격사유⁵⁾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법체계에서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관광사업자의 정의에 2인 이상의 개인 공동사업자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경우 행정 실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자들의 공동투자를 통한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관광숙박업을 등록하는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관광숙박업 대상 부동산의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예방하고 관광숙박업 경영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임.

4) 자본금, 시설, 설비 등으로 구체적인 관광사업 등록기준은 [참고자료 1] 참조

5)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법 시행령 별표 16)은 관광숙박업에 해당하는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으로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사업자 중 일부만 관광숙박업을 운영할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하여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는 경우 현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설비 등의 등록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공동사업자로서 관광숙박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관광숙박업 등록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음.

다만, 개정안은 ① 관광숙박업의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를 ‘등록 규정’이 아닌 ‘정의규정’에 규정하고, ② 등록 대상 관광사업 중 특정 업종(관광숙박업)의 등록요건만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77

6) [참고자료 1] 참조

※ 참고자료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1. 여행업

가. 종합여행업

-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일 것
-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내외여행업

-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것
-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천500만원 이상일 것.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750만원 이상으로 한다.
-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상관광호텔업

-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4)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한국전통호텔업

-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가족호텔업

-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호스텔업

-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바. 소형호텔업

-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 (2)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 (3)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추는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다.

(4)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의료관광호텔업

(1)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호·제22호·제23호 및 제26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않을 것

(5)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6)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7)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이 경우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9)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등록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환자수(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연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1개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연환자수가 3,000명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것

-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는 비영리법인(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다출연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의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유치업자

-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 실환자수(둘 이상의 유치업자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200명을 초과할 것
-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 또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최대출연자가 되는 법인(유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출연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가)1)의 기준을 충족할 것

3.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20실 이상으로 한다.
- (2)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 · 전시관 · 미술관 · 박물관 · 수영장 · 테니스장 · 축구장 · 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 · 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관광객이용시설업 (생략)

5. 국제회의업

(가) 국제회의시설업

-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회의시설 및 전시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 (2) 국제회의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과 쇼핑 · 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회의기획업

- (1) 자본금 : 5천만원 이상일 것
-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